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7
----------	------

제출연월일 : 2003. 1.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1. 제안이유

- 낮게 책정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
- 환경부의 상·하수요금 합리화 방안에 의거 업종 통·폐합
- 누진체계 단순화에 따른 업종구간별 요율 조정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

2. 주요골자

- 가. 겸업종시 요금적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안 제27조 제3항)
- 나.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41조)
- 다. 상수도 요금(10%) 인상 및 업종구간별 누진단계를 정비함
(안 별표 1)
- 라. 업종간 통·폐합 및 업종별 구분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
(안 별표 2)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도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7.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제24조제1항중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이 경우 급수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신청 시점까지 사용료와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영업용”을 “영업용(또는 업무용)”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1호 및 제2호중 “영업용”을 각각 “영업용(또는 업무용)”로 하며, 같은조같은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가정용만을 적용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중 “2개월”을 “2회”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시장은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손·망실하거나 관리상의 부주의로 파손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등에 대하여 계량기 설치비용과 계량기대금을 징수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 종 별 요 율 표

(단위 : 톤, 원)

업 종 별	단 계 별	
	사 용 량(m ³)	단 가
가 정 용	1~20	330
	31~30	600
	31이상	980
업 무 용	1~100	700
	101~300	800
	301~1,000	900
	1,001~2,000	950
	2001이상	1,000
영 업 용	1~100	850
	101~300	1,050
	301~1,000	1,100
	1,001~2,000	1,200
	2001이상	1,300
대 중 탕 용	1~500	660
	501~1,000	870
	1,001~1,500	1,060
	1,501~2,000	1,200
	2,001이상	1,300
전용공업용	월2,000톤이상 사용업체	827

<별표 2>

업종별 구분표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 전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사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가게 ○ 고아원, 보육시설,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업무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 관공서, 병영, 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국가유공자단체, 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공익단체)
영업용	○ 식품제조·가공업(가축·가금도살업 및 정육점 포함), 식품접객업, 식품보존업, 청량음료제조업, 제과업, 양조업, 제분업(방앗간포함) ○ 제빙, 냉동, 냉장업 ○ 숙박업(여인숙 제외), 공연장, 유기장업, 오락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대형할인마트) ○ 자동차정비업(검사장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가스충전소포함), 운송(창고보관업 포함) 또는 관광업 ○ 음식점, 학원(사설독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포함, 전당포 제외) ○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 레미콘, 시멘트기공업, 벽돌제조업, 요업, 도금업 ○ 병·의원(한의원, 침술원 포함) ○ 이발소, 미용실 ○ 화훼, 식목업 ○ 한증막업, 찜질방, 불가마방·황토방 등을 전문으로 하는 영업장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 시술소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 최종단계요율적용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
대중탕용	○ 일반목욕장업(공동탕업, 가족탕업)
전용공업용	○ 공업용수 공급시까지 월 2,000톤이상 사용하는 공단업체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신고) ①(생략) 1. ~ 5. (생략) 〈신설〉 〈신설〉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생략)		제18조(신고) ①(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수도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7.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분할적용을 받고자 할 때 8.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현행과 같음)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생략)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 이 경우 급수중지 또는 급수장치 의 폐전신청 시점까지 사용료와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제27조(업종의 구분) ①~②(생략)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사용량이 영업용 가구와관계 없는 가구당 월사용량의(이하 가정용 가구당이라 한다)15m ³ 으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②(현행과 같음) ③ 영업용(또는 업무용) 1. 영업용(또는 업무용) 영업용(또는 업무용) 영업용(또는 업무용) 영업용(또는 업무용)		

현행	개정안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 (기본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으로 하고 그 잔여량이 <u>영업용</u>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u>영업용</u>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 (기본량)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기본량을 적용하고 이에 <u>영업용</u> 기본량을 가산한다. 다만 위의 수도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월사용량은 <u>영업용으로 적용</u>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생략)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②(생략)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2.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 가정용만을 적용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현행과 같음) 1. <u>2회</u> ②(현행과 같음)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시장은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망실하거나 관리상의 부주의로 파손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등에 대하여 계량기 설치비용과 계량기대금을 징수한다.

상수도요금 요율표 신·구대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업 종 별	사 용 량	단 가	업 종 별	사 용 량	단 가	
가 정 용	1-10	256	가 정 용	1-20	330	
	11-20	366				
	21-30	512		21-30	600	
	31-40	666				
	41-50	805		31이상	980	
	51이상	981				
업 무 용	1-20	527	업 무 용	1-100	700	
	21-50	593		101-300	800	
	51-100	659		301-1,000	900	
	101-300	732		1,001-2,000	950	
	301이상	827		2,001이상	1,000	
영 업 용	1-30	556	영 업 용	1-100	850	
	31-50	703		101-300	1,050	
	51-100	952		301-1,000	1,100	
	101이상	1,215		1,001-2,000	1,200	
				2,001이상	1,300	
육탕1종	1-200	483	대중탕용	1-500	660	
	201-300	608		501-1000	870	
	301-500	703		1,001-1,500	1,060	
	501이상	871		1,501-2,000	1,200	
육탕2종	1-200	644		2,001이상	1,300	
	201-500	1,047				
	501-1000	1,252				
	1001이상	1,420				
			전용공업용	월2,000톤이상 사용업체	827	